##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0 발의연월일: 2024. 6. 12

발 의 자:김용만・이훈기・복기왕

김용민 • 이병진 • 모경종

이용우 · 김태년 · 박선원

이광희 • 권칠승 • 이인영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 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.

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,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.

이에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경우를 서훈의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제4호 신 설).

법률 제 호

##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경우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서훈의 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서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서훈의 취소 등) ① 훈장	제8조(서훈의 취소 등) ①
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	
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, 훈	
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	
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	
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4.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
	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제3조
	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
	규명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
	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하
	였다고 결정한 경우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